
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

일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

전문위원 라 도 군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☐ 제출일자 : 2007년 3월 13일

☐ 제 출 자 : 안재홍의원 외 6인

2. 위원회 회부

☐ 회부일자 : 2007년 3월 13일

☐ 상정일자 : 2007년 3월 14일

〈제1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〉

3. 개정사유

- ☐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제3항에 의거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, 보다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 의회 실정에 맞게 회기총일수와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☐ 의회의 연간 회기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함 (안 제2조)
- ☐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·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함 (안 제3조 제1항).

5. 검토의견

-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개정·공포되어 지방의회 회의 총일수 제한 조항이 조정되고,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구의회의 실정에 맞는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는 것으로
- 보다 심도 있는 안전 심사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아울러 회기기간 중 안전과 관련한 현장방문 등을 실시키 위해서는 현행 80일 이내로 되어 있는 회기일수를 120일 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또한, 총회기일수를 120일 이내로 함에 따라 정례회 회기일수를 현행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6. 관련 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(정례회), 제41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